

전주지방법원 2020. 5. 13 선고 2019가단3059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정송

담당변호사 이기동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9. J

10. K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5. 13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L 대 37m²에 관한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82. 4. 29. 접수 제221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임성실

별지